

직장인보장 보험

재무부 영보 22330-241 (91.9.22) 변경
191.9.1 시행

직장인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계약의 효력)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회사가 청약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일련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④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사망 또는 별표4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 1급의 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 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①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4조 (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帶) 로 합니다.

제 5조 (계약의 무효) ①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6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급여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 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급장애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중 별표 3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분류표” 상의 교통사고 (이하 “교통사고” 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보험금을 지급
4. 보험기간중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제 1급장애보험금을 지급
5.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애 (이하 “장애” 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장애급여금을 지급

②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중 제 2급 또는 제 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제 1항 제 2호 내지 제 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제 1항 제 3호 내지 제 5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3호 내지 제 5호 또는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제 1항 제 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류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⑦제 6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 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⑧제 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장애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장애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 1호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장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⑩장애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 7조 (배당금의 지급) ①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 (전쟁, 기타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채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4. 회사가,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6. 모집인들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 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 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 ①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6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주소변경 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려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이하 “유예기간 (猶豫期間)” 이라 합니다) 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 제14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제14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 (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 하여 드립니다.
-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 (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아니합니다.
- ③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④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제 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 ⑥이 보험에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은 부가되어 있는 특약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15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계약이 효력상실 (効力喪失)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復活) 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

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범위내 (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조 제 3항, 제 2조, 제 3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7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16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회사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만기급여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18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6조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에 배서 (背書) 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 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계약자가 제 1항 제 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계약자가 제 1항 제 5호중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신청한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장래에 향하여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19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제 1항의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고 보험료 납입중인 때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제22조 (약관대출) ①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22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제 7조, 제 8조 제 2항, 제14조 제 1항, 제16조, 제19조 제 2항, 제20조, 제22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도

(남자)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전기월납)

구		분	6 개 월	1년	3년	5년	10년
3 년 만 기	3배보장	납입보험료	5,682	11,364	34,092	-	-
		해약환급금	4,330	9,795	34,092	-	-
	5배보장	납입보험료	7,170	14,340	43,020	-	-
		해약환급금	5,454	12,341	43,020	-	-
	7배보장	납입보험료	9,102	18,204	54,612	-	-
		해약환급금	6,922	15,663	54,612	-	-
	10배보장	납입보험료	11,556	23,112	69,336	-	-
		해약환급금	8,780	19,870	69,336	-	-
5 년 만 기	3배보장	납입보험료	2,562	5,124	15,372	25,620	-
		해약환급금	1,285	3,594	13,858	25,620	-
	5배보장	납입보험료	3,204	6,408	19,224	32,040	-
		해약환급금	1,600	4,481	17,310	32,040	-
	7배보장	납입보험료	4,038	8,076	24,228	40,380	-
		해약환급금	2,015	5,645	21,800	40,380	-
	10배보장	납입보험료	5,100	10,200	30,600	51,000	-
		해약환급금	2,547	7,134	27,523	51,000	-
10 년 만 기	3배보장	납입보험료	1,188	2,376	7,128	11,880	23,760
		해약환급금	0	886	4,969	9,781	23,760
	5배보장	납입보험료	1,452	2,904	8,712	14,520	29,040
		해약환급금	0	1,090	6,030	11,875	29,040
	7배보장	납입보험료	1,788	3,576	10,728	17,880	35,760
		해약환급금	0	1,298	7,335	14,506	35,760
	10배보장	납입보험료	2,220	4,440	13,320	22,200	44,400
		해약환급금	0	1,607	9,047	17,917	44,400

(여자)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전기월납)

구		본	6 개 월	1 년	3 년	5 년	10년
3 년 만 기	3배보장	납입보험료	2,874	5,748	17,244	-	-
		해약환급금	2,190	4,955	17,244	-	-
	5배보장	납입보험료	3,432	6,864	20,592	-	-
		해약환급금	2,611	5,908	20,592	-	-
	7배보장	납입보험료	4,164	8,328	24,984	-	-
		해약환급금	3,170	7,172	24,984	-	-
	10배보장	납입보험료	5,088	10,176	30,528	-	-
		해약환급금	3,869	8,756	30,528	-	-
5 년 만 기	3배보장	납입보험료	1,230	2,460	7,380	12,300	-
		해약환급금	619	1,730	6,647	12,300	-
	5배보장	납입보험료	1,470	2,940	8,820	14,700	-
		해약환급금	742	2,072	7,946	14,700	-
	7배보장	납입보험료	1,782	3,564	10,692	17,820	-
		해약환급금	898	2,509	9,631	17,820	-
	10배보장	납입보험료	2,172	4,344	13,032	21,720	-
		해약환급금	1,078	3,025	11,720	21,720	-
10 년 만 기	3배보장	납입보험료	522	1,044	3,132	5,220	10,440
		해약환급금	0	394	2,140	4,231	10,440
	5배보장	납입보험료	618	1,236	3,708	6,180	12,360
		해약환급금	0	450	2,515	4,989	12,360
	7배보장	납입보험료	744	1,488	4,464	7,440	14,880
		해약환급금	0	531	3,013	5,988	14,880
	10배보장	납입보험료	906	1,812	5,436	9,060	18,120
		해약환급금	0	655	3,671	7,287	18,120

(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금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판기급여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1호)	판기에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사망보험금 또는 제 1급장해보험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2호)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교통재해보험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3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I형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배액 II형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배액 III형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배액 IV형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배액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제 1급 장해보험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4호)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I형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배액 II형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배액 III형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배액 IV형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배액
장해급여금 (약관 제 6조 제 1항 제 5호)	재해로 인하여 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3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4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5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6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 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캐이블카, 곤돌라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60 - E 869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파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 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교통사고에 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에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 1호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특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장애 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부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부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0. 묘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 손가락 또는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발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ㄱ, ㄴ, ㄷ), 치설음 (ㄹ, ㄷ, ㄷ),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의 소동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 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인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인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 1급의 5,6,7,8,9 , 제 2급의 1,2,3 , 제 3 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 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